

# 감 사 원

## 통보(비위)

제 목 금품 수수

소 관 기 관 법무부

조 치 기 관 법무부

내 용

### 1. 업무 개요

법무부 ◎국 ●소<sup>55)</sup> ○부 ●과 과장 AP은 2016. 6. 2.부터 2019. 2. 27. 현재 까지<sup>56)</sup> 위 관서 위 직위에서 약품 관리 등 ●소 내 약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.

### 2. 관련 규정 및 판단 근거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청탁금지법”이라 한다) 제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,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.

또한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금품 등을 받은

---

55) ●소(충남 공주시 소재)는 법무부 ◎국의 소속기관임

56) 2016. 6. 2.부터 2018. 4. 15.까지는 ○소 ●부 ●과장 직무대리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

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<sup>57)</sup> 서면으로 신고하는 한편, 제공자에게 그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AP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■■ 부장 AQ의 요청으로 총 3차례<sup>58)</sup>에 걸쳐 ●소의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(구매일자, 약품명, 수량, 약품단가, 제약회사명)<sup>59)</sup> 자료를 제공한 후 AQ으로부터 2018년 1월경(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음)과 같은 해 4. 23. 및 7. 24.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씩, 계 3장을 우편으로 제공받았다.

또한 AP은 AQ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장 중 1장은 2018. 7. 14.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의 이마트에서 물품 구입을 위해 사용<sup>60)</sup>하였고 나머지 2장은 같은 해 10. 1. ●소 약제과 사무실에서 찢어 폐기하는 등 제공자인 AQ에게 해당 금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, AQ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9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. 23. 소속기관인 ●소에 신고하였다.<sup>61)</sup>

57) 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'(국민권익위원회)에 따르면 '지체 없이'란 '불필요한 지연 없이'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

58) AP은 AQ에게 2018. 1. 25.과 같은 해 4. 13. 및 7. 20.에 해당 정보를 메일로 송부하였으며, 이후 AQ은 AP에게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씩을 우편으로 발송함

59) 해당 항목은 ●소가 2013. 4. 19. 정보공개 청구(청구자: AR)를 받아 제공한 적이 있는 자료와 항목이 동일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아님

60) AP은 2018. 11. 6. ●소 ■과 AS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AQ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, 이번 감사 시 확인한 결과 같은 해 7. 14.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사용하여 스카치매직테이프(총 14,200원)를 구매하였고 거스름돈으로 상품권 85,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. 다만 위 상품권 85,000원에 대해 AP은 찢어버렸다고 진술함

61) 2018. 10. 1. 과 물품(쓰레기통) 구입 비용의 처리에 대해 AP은 AQ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으로 쓰자고 하였으나, 과 운영 비로 써야 한다는 ●소 ●부 ●과 AT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후 AP은 상품권 2장을 찢어 폐기하였음. 위 상품권과

이뿐만 아니라 AP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회사 ■■계약 ●지점 지점장인 AU<sup>62)</sup>로부터 2018. 2. 12.<sup>63)</sup>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냄비 2개(품목명: 테팔 듀에또 스테인리스 양수곰솔 22cm, 품목가액: 개당 117,000원)<sup>64)</sup>를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서도 해당 사실에 대해 ●소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다.

따라서 AP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, AU의 행위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.<sup>65)</sup>

## 관계기관 등 의견

① **관계기관 의견** 법무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「청탁금지법」을 위반한 AP과 AU에 대해 징계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② **관련자 주장** AP은 감사원 문답조사(2019. 2. 25.~2. 26.)에서 2018년 1월 등 3회에 걸쳐 AQ으로부터 상품권 3장을 받은 사실과 같은 해 2. 12. AU로부터 냄비

---

관련하여 과 내부에 잡음이 계속 있어 AP은 같은 해 10. 23. ●소에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였음

62) AU는 주식회사 ■■계약에서 납품하는 쿼티아핀 XR 제제의 PTP(Press Through Package) 포장 개봉, 즉 철폐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●소 ●과를 몇 차례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●과장인 AP을 알게 되었음

63) AU의 지시로 주식회사 ■■계약 ●지점 팀장 AV가 해당 물품을 ●소 ●과에 가져다 주었음

64) AP은 AU로부터 받은 냄비 2개를 ●소 약제부 약제과 직원인 AW과 AX에게 주었음

65) AQ의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나 감사기간 현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임(관할: 서울중앙지방법원)

2개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, 초임 과장으로서 ○과와 직원들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답변하였으며 AQ과 AU 역시 AP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다

**조치할 사항** AP과 AU의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2항 및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법무부장관은 AP과 AU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,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[통보(비위)]